

#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관 련<br>1673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
제안연월일 : 2020년 12월 17일
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, 관련 시행규칙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범위는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2를 따른다고 한 부분을 삭제함(안 제1조 수정)

#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의 "하며, 그 범위는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2를 따른다"를 "한다."로 한다.



정경제생활을 영유  
할 수 있도록 정보  
를 제공하고 지원하  
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 중 “금융소외계층”을 “금융취약계층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<신·구조문대비표>

| 현 행  | 수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받는 <u>금융소외계층</u>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시민 중 <u>금융소외계층</u>과 과다채무자(이하 “채무자”라 한다)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받는 <u>금융취약계층</u>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시장의 책무)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금융취약계층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|